

	<h2 style="margin: 0;">강사료지급규정</h2>	규정번호	3-5-03
		제정일자	2009. 7. 1.
		개정일자	2026.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강사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대학교의 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전임교원으로서 전임 책임시간 이외의 강의를 “초과강의”라 한다.
2. 전임교원 외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강의를 “시간강의”라 한다.
3. 정규시간표 이외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는 강의를 “특별강의”라 한다.
4.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수업을 “온라인강의”라 한다.
5. 강좌당 수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를 “대단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책임시간)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수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4조(강사료 지급 기준) ①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3.1.)

- ② 강사료 지급은 주당 강의시수를 산출하여 매달 27일을 기준으로 3주 또는 4주 단위로 지급하며, 휴강 및 보강은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6)
- ③ 강사료 산출은 매달 27일을 기준으로 3주 또는 4주 단위로 주당 강의시수를 근거로 산출하며, 휴강 및 보강을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6., 2019.8.1., 2026.3.1.)
- ④ 삭제 <2016.3.1.>
- ⑤ 강사의 임금 지급은 강사임금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9.8.1.)

제5조(강사료 계산) ①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1., 2023.9.1., 2025.3.1.,2026.3.1.)

1. 이론과 실습 강의는 동일하게 계산한다.
2. 강사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3. 강의시간은 수업관리규정 제4조(수업시간)에 따른다.
4. 간호학과 임상실습 교과목은 교육과정의 시수로 계산한다.
5. 동일한 교과목을 동일한 콘텐츠로 원격수업 분반 시, 강사료 시수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체 위탁과정 강사료 시수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며, 비전임교원은 예외 적용한다.
6.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수는 별도로 산정하며 강사료는 [별표2]에 의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국정 공휴일

제6조(강사료 지급) ① 강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2.9.1., 2026.3.1.)

②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는 수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책임시수를 초과한 전임교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3.1)

③ 겸임교원·초빙교원·강사의 강사료는 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8.1.)

④ 삭제 <2026.3.1.>

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는 [별표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9.1.)

제7조(외국인 초빙 강사료) 외국인으로 초빙에 의하여 항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계절학기강사료) 계절학기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특강강사료) 특강강사료는 강좌개설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4.3.1.)

[별표 2] (개정 2017.4.1., 2019.8.1., 2022.9.1. 2023.9.1., 2025.3.1., 2026.3.1.)

### 강사료 및 출장비 지급기준표

#### ▣ 직급별 지급기준

구분	직급	내용	금액	비고
정규과정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20,000원	
	초빙교원	초과강의료	18,000원	10시간 이상부터
산업체위탁과정	겸임교원	기본강의료	40,000원	9시간까지
		초과강의료	20,000원	10시간 이상부터
전공심화과정	강사	시간강의료	32,000원	
	원어민강사	원어민강의료	45,000원	
	채플강사	채플강의료	50,000원	
전문기술석사과정	전임교원	강의료	25,000원	책임시수 외 별도 지급
	겸임교원	강의료	41,000원	

#### ▣ 외부위탁교육장 출장비 지급기준

구분	직급	내용	금액	비고
외부위탁교육장	겸임교원	교통비	1회 : 37,500원 1개소 이상 : 150,000원	의정부 관내 외부교육장 강의시 미지급

※ 외부교육장 교통비는 4주 지급기준으로 산정함

※ 2025학년도 신규 개설 외부교육장부터 적용

#### ▣ 산업체위탁과정 원격수업 강사료 인정 기준

강좌수	인정 강좌 수
1 ~ 3개	1개
4개 이상	2개

####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

수강 인원	내 용
100 ~ 150명	시간당 시수의 1.5배
151명 ~ 250명	시간당 시수의 2배
251명 이상	시간당 시수의 3배

※ 강좌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